

의안번호	2200652
의 퇴 인	소병훈의원
회 답 일	2024.08.16.
추계번호	24D1081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6제1항 및 제2항(피해자보호명령등) 신설	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7조의6제7항(피해자보호명령등) 신설	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-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-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-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·귀가 시 동행 -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-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의6제1항 및 제2항(피해자보호명령등) 신설	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및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재정을 수반하지 않음
2	안 제17조의6제7항(피해자보호명령등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스토킹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요청(안 제17조의6제7항 신설)

- 개정안은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호를 위한 특정시설의 확대, 신변경호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장비 확대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법원 직권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증가 건수, 신변안전조치 종류별 증가 건수, 신변안전조치 관련 시설의 확대 및 인력 증원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신변안전조치 유형은 보호시설 연계, 임시숙소 제공, 특정시설 신변안전조치, 신변경호, 맞춤형 순찰, 112시스템 등록, 스마트워치 지급, CCTV 설치, 가해자 경고, 피해자 권고, 신원정보 변경·보호 등
 - 경찰청에 따르면, 전체 범죄 유형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2022년 기준 29,372건이고,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는 7,091건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